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039 취득세경정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1,560,680원의 취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가. 원고는 2018. 12. 19. 차량번호 B 쏘나타 승용차(배기량 1,999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9. 1. 2. 주소지를 관할하는 [redacted]시에 배우자 C과 각 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1,560,680원)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배우자 C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redacted]시 D, E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9. 6.경 [redacted]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자 원고만 세대를 분가하여 2019. 6. 25. [redacted]시 [redacted]구 F, G호에 전입신고하게 되었다.

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9. 7.경 원고에게 세대 분리일인 2019. 6. 25.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됨을 고지하며, 원고와 배우자 C이 다시 세대를 합칠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됨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2019. 7. 24. [redacted]시 D, E호에 전입신고하여 다시 배우자 C과 세대를 합치고, [redacted]시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C이 취득세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면제된 취득세에 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1,560,680원)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9. 8. 11. 그 취득세 1,560,68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1,560,680원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그 경청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수원시에 있는 직장 근처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의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배우자 C은 [redacted]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재직 중이어서 함께 전출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원고의 세대 분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만일 이를 안내받았더라면,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안내도 없이 단순히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등록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이 세대 분가로 더 이상 그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원고가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제도의 입법 취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예외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이거나 사망, 혼인 등으로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단지 원고가 직장 근처로 이사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사유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면제된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세대 분가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면제된 취득세 추징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신청 당시 피고로부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안내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안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득세 감면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법령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동일 세대를 이루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비장애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서로 독립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위와 같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 실제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를 불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로 장애인이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면제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끝.